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사경찰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 신설〉

■ 허영 의원(의안번호 제2206729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군사경찰 소송 지원(안 제17조의2 신설)	3
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안 제17조의3 신설)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영 의원
2. 발 의 일 : 2024. 12. 19.
3.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군사경찰 소송 지원(안 제17조의2 신설)

- ☐ 개정안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변호인 선임 등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 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군사경찰은 현행법 제5조제1항1)에 따라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2)

- 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군사상 교통·운행·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 2)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현행법 제8조³⁾에 따라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사경찰은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현행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군사경찰장비, 군사경찰장구, 분사기,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여될 가능성이 높음.

□ 개정안은 이러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소속 기관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국가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과 군사경찰이 업무수행시 소송 비용에 따른 경제적인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범죄의

-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 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예방·제지와 관련된 직무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여짐.

- 또한 유사입법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도 직무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정안의 규정은 필요해 보임.

[소속 직원에 대한 소송 지원 유사입법례]

구분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4 (소송 지원)	제11조의4(소송 지원) <u>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u>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6 (소송지원)	제16조의6(소송지원) <u>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u>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소송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군사경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⁴⁾.

- 한편, 개정안은 소송 수행 등의 지원 주체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5조제2항~제4항에서 규정된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감독 체계를 고려하여 지원 주체에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 국방부는 군사경찰 직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바, 군사경찰의 안정적 직무수행에 위해 소송지원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예시: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국방부장관 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소방기본법」에서도 지원 주체에 ‘소방서장’을 포함시키고 있음.

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안 제17조의3 신설)

-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 군사경찰은 현행법 제5조제1항6)에 따라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7)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현행법 제8조8)에 따라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사경찰은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현행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군사경찰장비, 군사경찰장구, 분사기, 무기 등의 사용할 수 있어 타인에 대한 피해로 형사책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
- 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군사상 교통·운항·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 7)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 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이러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군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군사경찰로 하여금 적시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제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형의 감면이 제한적인 조건 하(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등)에서만 인정되어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3⁹⁾에 따라 군인의 군사작전 수행이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있는바, 형평성 차원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유사 직종인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감면 규정이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025.1.7. 공포, 2026.1.8. 시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은 형사책임의 감면대상이 되는 범죄에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형의 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¹⁰⁾.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각 호에서 열거된 「형법」의 범죄에 대응되는 「군형법」상의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예시: 「군형법」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중 폭행, 상해, 살인에 관한 범죄,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범죄 범위에 대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구분	내용
개정안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u>군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u>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1. 「형법」 제2편제24장 <u>살인의 죄</u> , 제25장 <u>상해와 폭행의 죄</u> , 제32장 <u>강간과 추행의 죄</u> 중 <u>강간에 관한 범죄</u> , 제38장 <u>절도와 강도의 죄</u> 중 <u>강도에 관한 범죄</u>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u>가정폭력범죄</u>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u>아동학대범죄</u>

□ 국방부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군사경찰의 불가피한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안정적·적극적 임무수행을 위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다만, 군사경찰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모든 직무수행과정에서의 면책이 아닌 살인·상해 등 특정범죄에 한하여 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군인(군사경찰)에 한하여만 모든 범죄를 면책대상 범위로 삼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무부는 군사경찰의 소극적 임무수행을 방지하고 안정적 적극적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다만, 현행법으로도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적극적 직무집행 필요성 못지 않게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한 통제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유사입법례에 의하더라도 면책의 대상이 되는 범죄 죄명을 명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8